

외국인 학생의 시간제 취업(S-3)

D-2 비자를 가진 모든 학생은 S-3 비자를 신청해야만 아르바이트 가능.

- ▶ 근무 시작일 1주일 전까지 시간제 취업 신청서식 작성 후, 유학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.
- ▶ 반드시 출입국.외국인청에서 시간제취업 신청을 하여 허가가 난 이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일할 시, 벌금 및 체류에 불이익이 발생함.

1. 시간제 취업 신청 대상

- 직전 학기 성적이 2.0 이상인 D-2 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

2. 허용범위

가. 심사기준

-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업과 병행하여 영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업무인지 여부
-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인지 여부
 - ※ 단, 개인과외교습행위는 교습행위의 특수성 및 국내고용시장 보호를 위해 시간제취업 대상에서 제외
-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

나. 허용시간

- (학부과정 학생) **주당 25시간 이내**
- (석.박사과정 학생, 수료후연구생) **주당 35시간 이내**
 - ※ 수업연한 초과한 학점 이수자는 시간제 취업 대상 아님(학부 8학기, 석/박사 4학기)
 - ※ 학기 중 공휴일(토요일 포함) 및 방학 중 무제한(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)
 - ※ **한국어 능력별, 학위과정별 허용시간(2018. 10. 1.부터)**

대학유형	학년	한국어능력 수준		허용시간	
				주중	주말,방학기간
학사과정	1~2학년	3급	미충족	10시간	
			○	20시간	제한없음
	3~4학년	4급	×	10시간	
			○	20시간	제한없음
석/박사과정	무관	4급	×	15시간	
			○	30시간	제한없음

다. 전문분야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(예시)

- 통역·번역, 음식업 보조, 일반 사무보조
-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

라.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

-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제조업(17.4월부터), 건설업(18.10월부터)인 경우
 - ※ 단, 제조업의 경우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
 - ※ 제조업, 건설업, 서비스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시간제취업확인서 상에 기재된 업종이 제조업 또는 건설업이 아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
- 직종제한 : E1~E7 전문분야 및 E9~10 분야는 제한
-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시간제 취업 활동 제한
 - ※ 영어키즈카페, 영어캠프, 외국어회화학원 등

마.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 형태는 제한

-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취업활동(배달대행업체 라이더 활동 등)
- 파견, 도급, 알선*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
- 원거리 근무(거주, 대학 소재 기준 최대 1시간 이내 거리를 적정거리로 간주함)

바. 허가기간 :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, 허용 시간 범위 내 장소는 2곳으로 한정

사. 장소변경 :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새로이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 함

아. 위반자 처리기준

-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
 - 불법취업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법제18조에 따라 처벌
 - 1차 적발 시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로 결정한 경우, 범칙금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시간제취업허가 제한
 - 2차 적발부터는 예외 없이 강제퇴거(단, 건설업은 적발횟수 관계없이 출국 명령)
-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
 - 1차 적발 시 ➡ 법제89조에 따라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
 - 2차 적발 시 ➡ 법제89조에 따라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
 - 3차 적발 시 ➡ 법제89조에 따라 유학자격 취소

3. 신청서류

-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신청서, 시간제취업 확인서, 성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계약서, 한국어능력 증빙서류(Topik),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(제조업에 한함)

4. 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(허가제외 대상)

-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,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

허가제외대상* 예시

- 수학중인 학교 내 조교(수업조교 포함)·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
- 가사보조인 등과 같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일상가사보조 또는 사무보조 등에 따른 사례금 기타 보수를 받는 경우
-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조연·감정, 행사참가, 영화 또는 방송 임시 (1회 및 비 연속성) 출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
-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, 교내에서 학업과 연계된 수익적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
-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 통역 요원으로 지정되어 경찰청에서 지정한 순번과 선호에 따라 비연속적으로 통역활동에 종사하는 경우(다만, 전문 통역관으로 채용되어 전문 직종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)

※ 사무소장은 활동의 형태, 보수, 기간 등을 종합적 고려, 허가 대상여부 판단

○ 유학생(D-2)의 수익적 연구 활동

- ① (부산대 내 연구활동)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

- i)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: 시간제취업 허가 면제
- ii)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: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

※ 학업 연계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 ①지도교수 확인서 및 ②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를 제출받아 개별 심사

- ② (부산대 외 연구활동) 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

- i)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: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

※ 학업 연계 여부는 ①지도교수 확인서, ②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, ③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참여 사유서를 제출받아 심사 (①~③ 모두 자율양식)

- ii)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: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필요

※ 연구(E-3)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심사기준은 연구(E-3)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

- ③ 자연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에서의 수익적 연구(원) 활동은 학업 연계 여부를 불문하고 예외적으로 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허용

※ 수익적 인턴활동도 수익적 연구활동 허가 기준 준용

○ 유학생(D-2)의 **전문직종 분야 인턴 활동 특례**

- 일-학습연계유학(D-2-7) 비자 소지자에 대해 재학기간 중 대학 외부 기관 및 기업체에서 전문직종 분야 인턴활동 허용

※ 학점 취득과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취업허가로 허용(재학기간 중 1회 최대 6개월)

5. 부산출입국·외국인청

- 장소 : 대한항공빌딩(중앙동) 1층
※주소 :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46(중앙동 4가 77-1)
- 찾아가는 길 : 지하철(1호선) 부산역 2번, 중앙역 14번 출구
- 업무시간: 월~금, 9:00 ~ 18:00 (12:00~13:00 점심시간)
- 문의전화 : 1345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hikorea.go.kr>